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 등의 책무에 해양생태계에 관한
외교적 노력 규정〉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247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가 등의 책무에 해양생태계에 관한 외교적 노력 규정	2

I. 제안경위

2024년 6월 10일 이병진위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 대책의 수립·시행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와 국제기구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현행법도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해양생태계가 훼손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 등의 책무에 해양생태계에 관한 외교적 노력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기관의 행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u>7.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기관의 행위에 대한 외교적 노력</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해류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해양의 특성상 해양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피해는 특정 국가의 연안에 한정되지 않으며,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역의 경우에도 오염물질의 전파로 인한 피해(월경성 해양오염)가 발생할 수 있음.

우리나라도 2023년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월경성 해양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기관의 행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취지로 보임.

□ 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 및 외교부는 월경성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하여 현행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1항에 국가 등의 책무,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에 관하여 규정¹⁾하고 있고,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제8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①국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주변국가와 공동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²⁾ 등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입법취지와 함께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의 보호,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전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영향 등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변국가와 공동으로 조사·연구·복원·복구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협력사업에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 및 지원대상기관의 종류와 지원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Article 5. COOPERATION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s far as possible and as appropriate, cooperate with other Contracting Parties, directly or, where appropriate, through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respect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nd on other matters of mutual interest,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제5조 협력

각 계약당사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및 그 밖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가능한 한 적절하게 다른 계약당사자와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한다.